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1398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38,881원 및 그 중 2,623,236원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4. 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김철환

별지